



JUNEYAO AIR  
吉祥航空

상해 길상항공  
국제 여객 및 화물 운송 약관

## 주네야오 항공사의 국제 여객과 화물 운송에 관한 일반 계약 조건

### 제 1장 정의

**제1조.** 특정 아이템에 관한 타 요건 혹은 규제를 제외하고는, 주네야오 항공사의 국제 여객과 화물 운송에 관한 일반 계약 조건(일반조건)에 대한 용어해석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 (1) 운송에 따른 환승 경유의 유무를 떠나, 국제협약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운송계약에 따라 국제 운송이란 출발 공항, 도착 공항 혹은 예정된 경유지가 중국이 아닌 운송을 일컫는다.
- (2) 상하이 주네야오 항공 주식회사는 편의상 주네야오 항공이라 부른다
- (3) 협약은 다음의 해당 문서들을 일컫는다: 1999년 5월 28일 서명한 국제 운송 규정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
- (4) 운송업자는 티켓 발행업체, 티켓 운송 혹은 티켓소지자와 화물 전달을 약속하는 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항공 운송업자들을 말한다.
- (5) 특정 항공 운항사를 지칭하는 항공사들의 코드는 두자의 혹은 세자의 코드로 표시한다.
- (6) 공식 대리인은 주네야오 항공사가 양도하고 주네야오 항공사를 대신하여 항공 운송 서비스(제품)를 판매하는 판매대리인을 말한다.
- (7) 승객이란 승무원을 제외한 티켓에 따라 운송되고, 운송 되어지는 모든 탑승객을 말한다.
- (8) 탑승권이란 주네야오 항공사 혹은 공식 대리인 혹은 운송 계약, 내용 설명서, 혹은 예약확인서 그리고 티켓 쿠폰 등이 포함된 전자티켓에 의해 발급한 "승객용 티켓과 화물 확인서"라는 증서를 말한다.
- (9) 인쇄된 운송계약서는 탑승권 혹은 티켓발급확인서/영수증과 함께 승객에게 전달 되었거나 인쇄된 일반적인 조건1 설명서를 일컫는다.
- (10) 운송비는 항공요금, 비용 그리고 항공사가 정한 해당 운송 조건을 일컫는다. 필요 시, 해당 부서의 승인이 첨부되어야 한다.
- (11) 티켓 쿠폰은 비행쿠폰 혹은 전자 비행 쿠폰을 의미하고, 이는 그 승객명이 쿠폰에 기재되어 있고, 이는 그 티켓에 인쇄된 탑승권을 가지는 것이다.
- (12) 계속적 티켓은 하나의 운송 계약을 위한 혼합된 두 티켓을 말하고, 이 두 티켓은 서로 연결된 승객을 위해 발급된 티켓을 말한다.
- (13) 예약확인서/영수증은 전자 티켓 승객을 위해 승객명, 비행 정보 등이 표시된 주네야오 항공사가 발급한 증서를 말한다.
- (14) 승객 쿠폰 혹은 승객 영수증은 주네야오 항공사 혹은 그의 대리인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항상 탑승객이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승객 쿠폰 혹은 승객 영수증과 함께 표시된 티켓의 한 부분을 나타낸다.
- (15) 비행 쿠폰이란 탑승권 혹은 승객이 지정된 비행기를 탑승할 권리를 가졌음을 나타내는 전자 티켓에 있는 전자 비행쿠폰의 "유효 운송"과 함께 표시된 부분이다.
- (16) 전자 쿠폰은 주네야오 항공사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가격과 함께 전자 비행 쿠폰 혹은 다른 증서를 의미한다.

- (17) 전자 티켓은 주네야오 항공사 혹은 그의 대리인에 의해 발급된 확인증, 전자쿠폰 혹은 해당 탑승 증서를 일컫는다.
- (18) 화물이란 여정 중에 승객이 가지고 가는 개인 재산을 의미한다. 다른 규정과 함께, 화물은 탑승객 체크인 화물과 기내 화물을 포함한다.
- (19) 화물티켓이란 티켓에 있는 탑승객의 체크인 화물 운송과 관련된 부분이다.
- (20) 화물 확인표는 특별히 체크인 화물을 식별하기 위해 제공된 증서를 의미한다.
- (21) 체크인 화물은 주네야오 항공사가 관리하도록 양도한 화물 체크를 의미한다.
- (22) 기내용 화물은 체크인 화물이 아닌 다른 화물을 의미한다.
- (23) 예정된 단기 체류는 주네야오 항공사의 티켓 혹은 비행 시간에 나타난 비행 경로에서의 추정된 단기 체류를 말한다.
- (24) 탑승수속 연장 시간은 승객이 체크인을 끝내고 탑승권 수령 전 주네야오 항공사의 지정된 시간을 의미한다.
- (25) 단기체류는 비행동안 예정된 체류지를 의미하고 그 장소는 출발 공항과 도착 공항 사이에 있다.
- (26) 불가항력이란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한다 하여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정상적, 예상외의,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 (27) 특별인출권은 국제 통화 기금 단체에 의해 규정된 특별 인출 권이다.
- (28) 일자는 1주일에 7일인 역년일을 뜻한다. 그러나, 승객에게 통지를 전달 할 때에는, 그 통지를 전달하는 일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티켓 효력시간 제한을 확인 할 때는, 티켓이 발행된 일자와 비행이 시작되는 일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29) 피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사망 혹은 인명피해를 야기시킨 피해는 기체에서 발생한 사건에 의해 야기 되었거나 혹은 기체에 타고 내리는 모든 진행 동안에 야기된 것을 의미한다. (2) 체크인 화물의 파괴, 분실 혹은 손상에 의해 야기된 피해는 체크인 화물이 기내 담당자의 통제하에 있는 기간 동안 혹은 기체 안에서 발생한 사건에 의해 야기된 것을 의미한다. (3) 탑승객 본인이 관리한 기내용 화물에 대한 피해는 기체 운항사 혹은 그의 대리인의 잘못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 제2장 적용 범위

### 제2조.

- (1) 조건2의 2,4,5항의 타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건2는 티켓의 운항사란에 나열된 주네야오 항공사 혹은 항공사 코드명의 비행기 혹은 비행 부분에만 적용한다.
- (2) 만일 운송이 사설 비행 계약에 따라 수행되었을 경우, 이 조건은 그 사설 비행 계약에만 적용하거나 혹은 그 조건이 그 사설 비행 티켓 조항에 명시된 상황에만 적용된다.
- (3) 몇몇 비행에서, 주네야오 항공사는 타 항공사와 코드쉐어를 하는데 이는 탑승객이 주네야오 항공사명과 회사번호가 인쇄된 티켓을 보유하고 주네야오 항공사 비행에 예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네야오 항공사는 예약시에 탑승객에게 코드쉐어 운영사의 기체를 탑승한다고 언급할 수 있다.
- (4) 이 조건은 주네야오 항공사가 제공하는 국제 운송에 적용되고, 만약 이 조건이 운송비 규정 혹은 관련 법과 상충할 경우, 운송가격 규정 혹은 해당 법이 우선한다.

(5) 이 조건 내에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약 주네야오 항공사의 규정이 이 조건과 상충될 경우, 이 조건이 우선한다.

### 제3장 티켓

#### 제1절 일반적 규정

**제3조.** 주네야오 항공사는 티켓에 명시된 이름의 탑승객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네야오 항공은 탑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티켓은 양도 불가능 하다.

**제4조.** 할인 가격으로 판매된 티켓에 대해서는 티켓가격은 부분적으로 환불 될 수 있고 혹은 티켓은 환불 될 수 없다. 탑승객은 그 가격과 가장 적합한 티켓을 선택할 수 있다.

**제6조.** 만약 탑승객이 조건 5에 기술한 미사용 티켓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리고 그 탑승객이 불가항력에 의해 탑승이 불가능 할 경우, 그 탑승객은 주네야오 항공사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야 하고 그 불가항력을 입증할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지정한 운영비를 상쇄하고 난 뒤 그 미사용된 티켓가격 부분에 대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제공하고, 그 탑승객은 다른 여행에서 주네야오 항공사 비행시 그 영수증으로 대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티켓은 이를 발행한 운항사의 영구적인 재산이다.

**제8조.** 전자 티켓을 제외하고, 탑승자는 비행 쿠폰과 미사용 비행티켓 그리고 탑승 쿠폰을 포함한 유효 티켓을 나타낼 수 없는 비행을 요구 할 수 없다. 만약 불완전 티켓 혹은 주네야오 항공사 혹은 주네야오 항공사 공식 대리인에 의해 변경되지 않은 티켓을 제시했을 경우 탑승객은 그 비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전자 티켓의 경우, 탑승객은 탑승객명과 함께 발급된 유효 전자 티켓을 소지해야 하고 동시에 신분증을 제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탑승객은 기체에 탑승할 권리가 없다.

**제9조.**

- (1) 만약 탑승권이 불완전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분실했거나 혹은 탑승자 신청에 따라 주네야오 항공사가 승인된 뒤에 탑승자가 제시한 티켓이 탑승 쿠폰, 미사용 비행 쿠폰을 포함 하지 않은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분실되었거나 불완전한 티켓을 새 티켓으로 교환하기 위해 환불 할 수 있다. 그러나, 탑승자는 예약한 항공권의 유효 티켓이 발행 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동시에 탑승자는 주네야오 항공사가 그 새 티켓을 환불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어떠한 비용과 피해 그러나 이는 원본 티켓 가격이상을 넘지 않는 비용과 피해에 대해 보증 한다라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타인에 의한 위조된 티켓에 따른 주네야오 항공사 혹은 이 티켓 운항사가 부담하게 되는 위험 때문이라도 이것은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이다. 그러나, 만약 그 피해가 주네야오 항공사 자체에 의해

야기 되었다면,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에 대해 탑승자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적절한 요금은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운항사에 의해 부과 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운항사 혹은 판매 대리인에 의해 티켓 분실 혹은 불완전한 티켓일 경우 그 피해는 포함 되지 않는다.

- (2) 만약 탑승자가 예약하여 그 유효한 비행 티켓이 발급되어 수령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거나 혹은 탑승자가 위에서 기술한 그 계약서에 서명 하지 않는다면, 그 운항사는 그 환불된 티켓에 대한 총 가격을 지불할 것을 탑승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최초 운항사에 의해 승인된 분실 혹은 불완전한 티켓은 티켓이 발행된 일자 혹은 비행시작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하고, 탑승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제10조.** 티켓은 가격을 포함 한 증서이고, 고객은 적절한 방식으로 그 티켓을 보관 해야 하고, 분실 혹은 도난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유지해 한다.

#### 제2절 티켓의 유효성

**제11조.** 티켓에 있는 타 규정을 제외하고, 이 조건 혹은 관련 운송비에서(운송비는 티켓 유효기간을 제한 할 수 있고, 유효 종류는 티켓에 인쇄되어 있다), 티켓 유효는 다음과 같다:

- (1) 승객은 티켓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사용 해야 하고, 그 티켓은 승객 여정 시작 이후 1년 이내에 유효하다;
- (2) 만약, 티켓이 완전히 다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그 티켓은 발급일 이후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제12조.** 티켓예약 시, 만약 주네야오 항공사가 그 티켓 유효 장소 지역 이내의 좌석을 배정하지 못 한다면,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승객을 위해 티켓 유효기간을 연장 해야 한다. 승객은 또한 이 장의 조건 6의 규정에 따라 그 티켓에 대해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3조.** 만약 승객이 여정 중에 몹시 아파서 티켓 유효일자 이내에 여행을 계속 할 수 없다면,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승객이 여행을 계속하기에 충분한 일자까지 티켓 유효기간을 연장 하거나 혹은 승객이 그의 여정을 정지하는 장소를 여행하는 동안 지급한 금액에 따라, 주네야오 항공사가 동일 등급 좌석을 제공할 수 있는 일자 이후의 마지막 비행기로 연장 할 수 있다. 그 아픈 승객은 인지가 찍힌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그 티켓에 여러 개의 비행 쿠폰, 한곳 혹은 그 이상 경유지를 포함하는 전자 티켓 쿠폰일 경우, 그 티켓의 유효기간은 승객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서 명시 한 일자 이후로 3개월 이상을 연장 할 수 없다. 이 상황을 고려할 때, 주네야오 항공사는 동행 승객 혹은 그와 같이 동행한 친척의 티켓 유효기간을 연장 해준다.

**제14조.** 만약 승객이 비행 중 사망할 경우, 그 동반자의 티켓 유효기간은 최소 중단 기간 제한을 취소 하거나 혹은 그 유효기간을 연장 하는 방법으로 수정해야 한다. 만약 승객의 가까운 친척이 여정 중에 사망할 경우, 그 승객 티켓과 그 승객의 가까운 친척의 티켓 유효기간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수정유형은 사명 증명서를 득하고 난 뒤에 진행 되어야 하고, 그 티켓 유효기간은 사망증명이 명확해진 일자 이후로부터 45일 이내이다.

### 제3절티켓쿠폰 순서와 사용

**제15조.** 승객이 구입한 티켓은 출발지에서 티켓에 명시된 예정 경유지와 최종 목적지 공항으로 승객을 운송하는데만 적용 되어야 한다. 승객이 지불한 티켓 가격은 주네야오 항공사 운송규정과 티켓에 정한 운송서비스에 기초한다. 티켓가격은 주네야오 항공사와 승객간의 서면 운송 계약의 기본 내용이다. 티켓에 있는 모든 쿠폰은 티켓이 발급되었을 때 예정된 순서대로 사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티켓은 인정 될 수도 없고, 유효하지 않는 티켓이 된다.

**제16조.** 만약 승객이 운송 내용 목록중의 하나라도 수정을 원할 경우, 승객은 사전에 주네야오 항공사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운송이 수정되면, 그 티켓 가격은 다시 계산 되어 진다. 승객은 스스로 그 신규 티켓 가격을 수락 할 것인지 혹은 최초 티켓 운송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불가항력의 이유로 승객이 그 운송 내용의 어떤 목록을 변경해야 할 경우, 승객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주네야오 항공사에 알려야 하고, 주네야오 항공사는 최선을 다하여 티켓 가격을 재계산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 경유지 혹은 최종 목적 공항에 승객을 운송해야 한다.

**제17조.** 만약 승객이주네야오 항공사의 허가 없이 운송을 수정할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승객의 실제 여행에 따라 티켓 가격을 결정한다. 승객은 최초 티켓 가격과 수정후의 해당 티켓 가격의 차액을 지불 해야 하고, 미사용 티켓 쿠폰은 취소 된다.

**제18조.** 운송 내용의 변경은 티켓 가격 변경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운송내용 변경은 티켓 가격 인상을 발생 시킬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도착지 혹은 여정 방향 변경의 경우.

**제19조.** 각 승객 티켓의 비행 쿠폰은 좌석 등급과 비행일자를 명시 하고, 이는 좌석이 예약되고 난 뒤에 만이 그 운송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만약 승객이 구매한 티켓이 예약되지 않았다면, 그 승객은 주네야오 항공사의 운송 규정과 가능한 좌석 여건에 따라서 승객의 좌석을 예약 할 수 있다.

**제20조.** 만약 승객이 그가 예약한 비행기를 탑승하지 않고, 승객이 주네야오 항공사에게 통보 하지 않았다면,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환승 비행 혹은 귀국 비행 좌석 예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만약 승객이 사전에 주네야오 항공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승객의 관련된 순차 비행 티켓을 취소 하지 않는다.

### 제4절운항사명과 주소

**제21조.** 티켓에 주네야오 항공사 명은 회사 코드 혹은 다른 형태의 축약어로 표현 될 수 있다. 주네야오 항공사명이 티켓의 운항사란에 첫 축약어와 함께 시작하는 출국 공항이 주네야오 항공사의 주소로 간주 되어야 한다. 전자 티켓을 사용 할 경우 그 주소는 승객의 예약 확인서/영수증의 최초 비행스케줄 부분에 적힌 것이 된다.

## 제 4장 티켓 가격과 세금

### 제22조. 티켓 가격

다른 규정을 제외하고, 티켓 가격은 출발 공항에서 최종 목적지 공항까지의 운송에만 적용 된다. 티켓 가격은 두 공항 혹은 공항과 다운타운간의 육로교통비는 제외 한다. 티켓 가격은 승객이 티켓을 구매한 일자의 주네야오 항공사의 효율적인 운송가격에 따라 정해지고, 티켓 가격은 예정일과 승객 티켓에 작성된 비행 부분에 적용 한다. 만약 승객이 비행 부문 혹은 여정일을 수정해야 한다면, 이는 승객이 지불해야 하는 티켓 가격을 변형시킬 수 있다.

### 제23조. 세금

정부, 타 관련 행정기관 혹은 공항 운항사가 징수하는 세금은 승객이 지불해야 한다. 티켓을 구매할 때, 주네야오 항공사는 티켓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와 같은 세금에 대하여 승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세금은 티켓과 분리되어 기재된다. 빈번하게 항공 여행 변경에 대한 세금은 티켓 판매 후에 세금 징수가 가능하다. 만약 티켓 판매 이후에 티켓에 기재된 세금이 인상되었거나 혹은 새로운 세금이 추가 될 경우, 승객은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동시에 티켓을 구매할 때에 감소되었거나 취소하거나 승객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승객은 그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제24조. 통화

승객이 그 티켓 지불 할 당시 혹은 승객이 구매하기 전에 다른 화폐 사용을 주네야오 항공사 혹은 공식 대리인이 허락 한 것을 제외하고는 티켓 가격, 세금 지급은 현지국의 화폐를 사용해야 한다. 현지 화폐가 환불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자체적으로 다른 종류의 화폐를 수용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제5장 좌석 예약

### 제25조. 좌석예약 조건

- (1) 주네야오 항공사 혹은 주네야오 항공사 공식 대리인은 비행기 좌석 예약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만약 승객이 요청할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서면 좌석예약 기록을 승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 (2) 특정 티켓 가격은 좌석 예약 변경 혹은 취소하는 승객을 제한 혹은 거절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티켓 가격과 관련된 특정 항목에 대한 해당 운송 규정을 참조 하시오.

### 제26조. 티켓 시간 제한

승객은 주네야오 항공사 혹은 주네야오 항공사 공식 대리인이 규정한 티켓 시간 제한 내에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 혹은,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좌석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27조. 개인 정보

승객이 주네야오 항공사에게 제공한 주네야오 항공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들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 좌석 예약, 티켓 구매, 추가 서비스 등, 서비스 확대와 제공, 이민국과 입국수속절차

에 필요한 편리한 처리, 그리고 정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 이 조건에서 승객은 주네야오 항공사는 승객의 개인 정보를 보유 하고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주네야오 항공사는 이와 같은 자료를 해당 부서, 공식 대리인, 정부 부처, 타 운항사 혹은 위에 언급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28조.** 주네야오 항공사는 승객이 신청한 좌석 혹은 지정된 좌석이 제공될 것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네야오 항공사는 이전에 배정된 좌석을 신청하려는 승객의 요청에 최선을 다하여 만족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그러나,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배정된 좌석이 제공 될 것이라는 것은 보증 할 수 없다. 운항, 안전, 그리고 안전에 필요할 경우, 심지어 모든 승객이 탑승 할 때에도 주네야오 항공사는 항상 좌석 배치 혹은 재배치 권리를 가진다.

#### **제29조. 좌석 재확인**

- (1) 환승 혹은 귀국 비행 좌석 예약을 위해, 주네야오 항공사는 재확인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타 운항사가 승객에게 환승 혹은 귀국 비행기의 좌석 예약 재확인을 요청할 경우, 그리고 그 승객이 재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운항사는 환승 혹은 귀국 비행기 좌석 예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 (2) 승객은 그들 스스로 항공여행과 관련된 각 운항사의 예약 재확인 요청을 인지해야 한다. 만약 재확인이 필요할 때, 승객은 티켓에 인쇄된 운항사 코드의 예약 재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제6장 티켓 환불**

#### **제30조. 일반적 규정**

- (1) 이 조건에서 타 규정을 제외하고, 주네야오 항공사는 티켓에 인쇄된 사람 혹은 적절한 지불증명서와 그 티켓을 지불한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에게 환불할 수 있다.
- (2) 만약 티켓에 고객명이 기재되어 있는 고객이 결재자가 아니고, 티켓에 인쇄된 환불 제한이 있을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결재자 혹은 결재자가 지정한 자에게 환불한다.
- (3) 티켓 분실을 제외 하고, 승객이 승객 쿠폰, 승객 영수증 그리고 모든 미사용 비행 쿠폰을 주네야오 항공사에 되돌려 주었을 경우에만, 그는 환불 받을 수 있다.

#### **제31조. 비자발적 환불**

만약 주네야오 항공사가 비행을 취소 하고, 예정된 스케줄대로 출발 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 공항 혹은 체류지에 착륙하지 않았거나 혹은 승객의 좌석이 예약된 연결 비행기를 놓치는 원인을 제정한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환불 절차가 진행 된다:

- (1) 만약 티켓이 미사용일 경우, 지불된 티켓 가격을 환불한다
- (2) 만약 티켓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지불된 티켓가격과 사용된 비행 부분의 티켓 가격의 차이보다 더 적지 않은 금액 그러나 티켓가격의 총 금액 보다는 많지 않은 금액을 환불 한다.



**제32조. 자발적 환불**

만약 승객이 환불을 수락하고, 그 환불은 이 장의 조건 31의 규정된 범위 내가 아닐 경우, 환불액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1) 만약 티켓이 미사용된 경우, 환불 금액은 지불한 티켓가격과 적절한 서비스비용/환불비용의 차액과 동일 하다.
- (2) 만약 티켓을 부분적으로 사용한 경우, 환불 금액은 지불한 티켓가격에서 사용된 비행부분의 해당 티켓 가격을 공제한 금액과 적절한 서비스 비용/환불비용의 차액과 동일하다.

**제33조. 분실한 티켓의 환불**

- (1) 만약 승객이 티켓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분실한 경우, 그 승객이 티켓 부실 증명을 주네야오 항공사에게 제출 하고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그 승객은 티켓이 발생된 일자로부터 혹은 여정이 시작되는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환불을 할 수 있다:
  1. 미사용된 혹은 보상 혹은 환불된 티켓의 전부 혹은 부분(그러나, 분실된 티켓이 사용된 경우, 보상받은 경우 혹은 타인에 의해 환불된 경우는 제외)
  2. 환불 신청한 사람이 주네야오 항공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타인에 의해 사용되었거나 환불된 티켓 전부 혹은 부분을 주장하여야 하고, 그 승객은 모든 티켓 비용을 주네야오 항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티켓이 주네야오 항공사가 야기시켜 티켓 사용이 되거나 환불이 된 경우는 제외)
- (2) 만약 주네야오 항공사 혹은 공식 대리인이 그 티켓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분실한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34조. 환불 거절 권리**

- (1) 유효 일자 경과 후 환불을 신청할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환불하지 않는다.
- (2) 증명서 존재로서 주네야오 항공사 혹은 정부 공무원에게 제공한 티켓에 대하여는 주네야오 항공사는 환불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승객이 주네야오 항공사에게 승객이 그 국가에 머무는 것을 허락했거나 그 승객이 타 운항사의 비행기 탑승을 허락 했거나 혹은 승객이 그 국가를 떠나기 위해 다른 교통을 이용한 것을 증명 할 수 있다면 그 조건 내에서 환불이 허용된다.

**제35조. 화폐**

주네야오 항공사는 승객이 티켓을 구매한 동일한 방법과 화폐로 환불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6조. 환불 담당자**

자발적 환불은 최초 운항상 혹은 공식 대리인을 통해서만이 처리될 수 있다.

**제37조. 신용카드 혹은 예금 카드로의 환불**

만일 승객이 티켓 지불 시 신용카드 혹은 예금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그 티켓 비용은 해당 카드의 계좌로만 환불될 수 있다. 주네야오 항공사는 최초 티켓 금액과 승객이 지불한 화폐를 기초하여 이 조건의 규정에 따라 환불금을 계산한다. 환전에 의해 발생한 차이를 위해, 해당 카드로 회수된 티켓금액은 주네야오 항공사 계좌 이체된 신용카드 혹은 예금 카드의 최초 티켓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승객은 그 차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 제 7 장 체크인과 탑승

### 제38조 일반규정

항공기의 체크인 정지 시간은 주네야오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통지하고 그들 자신의 항공기에의 체크인 정지 시간을 따라야 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여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승객들은 check-in을 처리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만일 그 승객이 정해진 체크인 정지 시간 전에 check-in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예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만일 그 승객이 택하는 일차 비행이 주네야오 항공사 항공기인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그 승객에게 그 체크인 정비 시간을 통지해야 한다.

그 여행에서, 환승을 위한 체크인 정정 시간에 대해, 승객들은 그들 자신이 그들을 확인해야 한다. 주네야오 항공사의 비행기의 체크인 정지 시간에서, 승객들은 주네야오 항공사 또는 그들의 위임 대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39조** 승객들은 탑승 게이트에서 비행기 대기 시 체크인 시간을 처리하기 위하여 규정된 시간을 지켜야 한다.

**제40조.** 만일 그 승객이 정해진 시간에 탑승 게이트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승객의 좌석을 취소한다.

**제41조.**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한 승객이 발생시킨 손해 또는 비용은 주네야오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8장. 운송 거부와 운송 제한

### 제42조 운송거부권

주네야오 항공사의 판단에 따라서,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승객에게 통지한 후 그 승객 또는 그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승객은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아래의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승객 또는 그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 (1) 그 승객 또는 그 수하물이 출발항, 목적지 또는 항해 국가의 적용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한다.
- (2) 그 승객 또는 그 수하물이 다른 승객 또는 승무원의 안전, 건강, 편의 또는 안락을 위협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
- (3) 알코올 또는 약품의 영향을 받은 승객의 정신 또는 신체적인 상태가 승객 자신, 다른 승객, 승

무원 또는 재산에 위험 또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4) 그 승객이 전에 비행 시 비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으며, 주네야오가 이러한 종류의 비행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

(5) 그 승객이 안전 점검의 승낙을 거부한다.

(6) 그 승객이 해당 항공료, 세금 또는 기타 청구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7) 그 승객이 유효한 확인서 없이 환승국가에서 유효한 여행 확인서의 제시를 거부하고, 입국을 시도하고, 비행 중에 여행 확인서를 파기하거나 승무원이 보관하여 서명해야 하는 여행 확인서를 제출 요구에 따라지 아니한다.

(8) 승객이 제시한 표가 적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주네야오 항공사 또는 그의 위임 대리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분실 또는 도난품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그 승객의 이름이 표에 인쇄되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없다.

(9) 그 승객이 본 조에서 제3장의 3조의 “쿠폰은 예정된 순서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승객이 보여준 티켓이 주네야오 항공사 또는 그의 위임 대리인이 발행하거나 수정한 것이 아니거나 손상되었다.

(10) 그 승객이 안전 또는 보안의 영역에서 주네야오 항공사의 지시를 무시한다.

(11) 그 승객이 금연과 전자 장치사용 금지 규정을 무시한다.

(12) 그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를 다를 수 없거나 거부하는 한다.

#### **제43조. 특별 서비스**

(1) 주네야오 항공사의 어떠한 승낙을 받고 관련 준비가 된 이후, 특별 서비스를 요하는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장애인

(2) 아동의 운송

5세 미만의 아동 승객의 운송 시, 그는 신체 장애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동반해야 하며, 그 아동을 동반할 때, 그 성인과 아동은 동일한 객실의 동일한 등급의 표를 구매해야 한다. 5세 이상이지만 12세 이하의 미동반 미성년자의 비행 시 그는 주네야오 항공사의 승낙을 얻고 주네야오 항공사의 규정, 미동반 미성년자의 운송 규정에 따른 항공료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제44조. 거부된 운송의 환불**

본 조건의 제8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거부되거나 그 좌석이 취소된 승객은 본 조건의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 **제9장 수하물**

#### **제45조. 수하물의 무료승차**

승객들은 무료로 어떠한 수하물의 휴대가 허용되지만, 주네야오 항공사 가 규정한 조건과 한도에 맞아야 한다. 조건과 한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주네야오 항공사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요청할 것.

**제46조. 무거운 수하물**

수하물의 무게가 수하물의 무료승차 한도를 넘는 경우, 승객은 초과 부분에 대해 대금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주네야오 항공사에 요청할 것.

**제47조. 수하물로서 운송될 수 없는 장애물**

다음의 장애물은 수하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체크인 수하물과 기내 수하물 포함).

- (1) 항공기, 탑승객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장애물, 예를 들어, 비행기에 위한 위험물 안전 운송을 위한 국제 민간 항공 기구 (ICAO)의 기술 지침, IATA 위험물 규정, 주네야오 항공사의 규정, 특히 다음의 제한 장애물: 폭발물, 압축가스, 부식물, 산화물, 방사선 또는 자석물질, 인화물, 독성물, 위협 또는 자극성 물질 등. 기타 유사한 장애물의 상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주네야오 항공사에게 요청할 것
- (2) 입국, 출국 또는 비행 국가 법규 또는 명령에 의해 제한된 장애물
- (3) 주네야오 항공사가 다음의 사유로, 운송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장애물. 장애물의 위험과 위협, 그 중량, 크기, 모양 또는 성격, 또는 항공기 유형의 요소에 따라서 파손 또는 멸실의 위험이 있는 장애물. 제한 장애물에 대해서는 주네야오 항공사에게 문의할 것.

**제48조.** 총과 탄약은 수하물로서 운송될 수 없으나, 스포츠와 사냥에 사용된 총과 탄약은 예외이다. 스포츠와 사냥에 사용된 총과 탄약은 체크인 수하물로 운송될 수 있다. 총은 총알을 빼내야 하며, 짐쇠를 잠그고 주네야오 항공사가 규제하는 대로 적당하게 포장해야 한다. 탄약의 운송은 지정된 ICAO와 IATA 규정 및 본 조건의 제47조 1호에서 설명되는 입출국 또는 경유국의 법규, 명령에 따라서 운송되어야 한다.

**제49조.** 체크인 수하물의 경우, 현금, 보석, 귀금속, 개인 전자 장치, 이양도성 영수증, 유가증권과 기타 귀중품, 정시에 복용해야 하는 의약 정제, 상업 서류, 여권과 기타 신분증 또는 샘플을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50조** 만일 승객이 본 조건의 47, 48 또는 49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한된 장애물을 놓은 경우, 주네야오는 그러한 종류의 수하물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정부가 물수하는 장애물 종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1조. 운송 거부권**

- (1) 본 조건의 제47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운송될 수 없는 장애물에 대하여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장애물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그의 발견 이후 운송의 계속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2) 주네야오 항공사가 그 장애물이 그의 크기, 모양, 중량, 내용 및 성격으로 인하여, 그리고, 안전 또는 운전, 또는 다른 승객들의 편의와 안락을 이유로 운송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가 그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주네야오 항공사에게 요청할 것.
- (3) 수하물은 주네야오 항공사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잘 포장되어야 하거나, 또는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포장과 외부 포장에 관해 상세한 것은 주네야오 항공사에게 요청할 것.

### **제52조. 확인권**

안전과 보안 상, 승객은 주네야오 항공사가 승객에 대한 보안 검사를 실시하고, 승객의 수하물을 확인, 검사 또는 엑스레이 검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그 승객이 현장에 있지 않으면,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승객이 수하물 내에 조건 제47조에 기술된 장애물을 휴대했는지, 또는 총 또는 탄약을 휴대했지만 그것을 조건 제48조에 따라서 그들을 제시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승객의 수하물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그 승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승객과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확인 또는 조사 시 승객의 수하물에 어떠한 손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엑스 레이 또는 검사 시 승객의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이러한 손해가 주네야오 항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이다.

### **제53조. 체크인 수하물**

- (1) 일단 승객의 체크인 수하물을 받는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각각의 체크인 수하물에 대한 수하물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 (2) 승객은 체크인 수하물의 내부와 외부에 그의 이름 또는 다른 개인적인 확인 기호를 표시해야 한다.
- (3) 체크인 수하물은 가능한 승객과 동일한 비행기로 운송되어야 하지만, 안전, 보안 또는 운항 상의 이유로, 다른 비행기로 운송될 수 있다. 그 승객이 법률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자신이 세관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 그 수하물은 주네야오 항공사에 의하여 그 승객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 **제54조. 기내 휴대 수하물**

- (1) 주네야오 항공사는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의 최대량과 중량을 제한한다. 만일 주네야오 항공사가 그의 한도를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승객이 항공기에 휴대한 그 수하물은 앞 좌석 또는 봉합된 머리 위의 라커에 놓아둘 수 있다. 그 수하물은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놓아둘 수 없거나 또는 중량으로 인하여 또는 안전을 고려하여, 체크인 수하물로서 운송되어야 한다.
- (2) 화물칸에 실을 수 없거나 또는 본 조건의 제61조 1호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그 장애물은 주네야오 항공사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 승객에 의해 사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기내에 반입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가 필요한 승객은 그에 대해 별도로 대금을 내야 한다.

### **제55조. 체크인 수하물의 요구와 인도**

- (1) 본 조건의 제53조 3호의 규정에 따라서, 승객은 가능한 신속하게 목적지 공항 또는 경유지에서 그의 체크인 수하물의 인도 요구를 해야 한다. 만일 그 승객이 적당한 시간 내에 체크인 수하물의 인도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승객에게 보관료를 청구한다. 만일 그 체크인 수하물이 도착일 이후 3개월 내에 인도 요구가 없는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수하물을 처리하고 그 승객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으며,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2) 수하물의 소지만이 확인하여 수하물 확인 태그는 체크인 수하물을 인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3) 수하물 확인 및 식별태크 없이 인도 요구를 해야 하는 사람은 주네야오 항공사에게 승인된

증서를 제공해야 하며, 그 상태에서,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수하물을 그 사람에게 인도할 수 있다.

**제56조.** 작은 동물을 운송할 때,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 (1) 그 승객은 개, 고양이, 새 또는 기타 애완동물과 같은 작은 동물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유효한 건강 증명서와 검역 증명서, 수입 또는 경유국이 필요로 하는 수입 허가증과 기타 확인 서류를 휴대하고 다는 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네야오 항공사는 동시에 애완동물의 운송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주네야오 항공사는 애완동물의 운송 시 항고의 최대량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운송은 주네야오 항공사가 규제하는 바에 따라서 추가 조건에 따라야 한다.; 상세한 한 것은 주네야오 항공사에게 요청할 것.
- (2) 수하물로서 운송되는 작은 동물과 그들의 컨테이너와 음식은 수하물의 무료승차로 간주될 수 없다. 단, 그들은 무거운 수하물로서 운송되어야 하며 승객은 어떠한 비율의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
- (3) 장애 승객의 인도권이 주네야오 항공사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수하물 무료승차로 간주하는 대신 무료로 운송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주네야오 항공사에게 요청할 것.
- (4) 주네야오 항공사는 주네야오 항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입증된 작은 동물의 질병, 손해,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5) 만일 소형 동물을 위한 수입 또는 경유국이 요구하는 유효한 수입, 수출, 보건 서류 및 기타 유효한 서류가 없는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작은 동물을 동반하는 승객은 필요 서류의 분실 또는 미작성으로 인하여 주네야오 항공사에게 발생된 벌금, 비용, 손실 또는 채무에 대하여 부담해야 한다.
- (6) 작은 동물로 인하여 승객은 다른 승객 또는 승무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제10장 비행 일정, 지연과 취소

### 제1절 비행일정

**제57조.** 비행 시간표에 예시되는 비행 일정과 항공기 유형은 그 시간표가 발표되는 날과 승객이 실제로 여행을 시작하는 날 중에 변경될 수 있다. 단,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비행 일정과 그 항공기 유형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비행 일정 또는 항공기 유형은 주네야오 항공사와 승객들 간의 운송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도 아니한다.

**제58조.** 예약 승낙 전, 주네야오 항공사는 승객에게 확실하게 계획된 비행 일정을 통지한다; 동시에, 그 비행 일정은 티켓에 기재된다.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티켓에 판매된 후 항공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만일 그 승객이 연락 방법을 잊어버린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승객에게 비행일정의 변경에 대해 성실하게 통지한다. 그 승객이 티켓을 구입했을 때, 주네야오 항공사가 그 승객을 위하여 다른 대체 비행편을 준비할 방법이 없는 동안 승객이 승낙을 할 수 없는 비행일정을 변경한 경우, 그 승객은 본 조건의 제31조 규정에 따라서 환불을 요청할 수가 있다.

## 제2절 비행의 취소, 항로의 변경, 비행의 지연 등

**제59조.** 주네야오 항공사는 비행의 지연과 승객 수하물의 지연을 피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0조.** 협정에서 규제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네야오 항공사가 일정에 따라 비행을 취소했거나 또는 적당한 시기에 이륙하지 않거나, 또는 도착 공항 또는 경유지에 착륙하지 않거나 또는 승객이 좌석을 예약한 항공기의 환승을 놓치게 한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승객이 선택할 수 있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주네야오 항공사는 구 승객이 이용 가능한 좌석이 있는 가장 최근 일정의 비행을 준비해야 하며, 그 경우, 추가 요금이 없다. 또한 주네야오 항공사는 필요 시 그 승객을 위한 티켓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 (2) 적당한 시간 내에, 승객의 비행항로를 변경하여, 주네야오 항공사는 추가 요금 없이 그 티켓에 기재된 목적지로 그 승객을 보내기 위하여, 양 측이 입증하는 주네야오 항공사의 항공기 또는 다른 항공사의 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 방법과 등급을 준비한다. 만일 그 티켓 가격과 비용이 그 승객이 지불한 가격과 비용보다 낮은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차액을 반환한다.
- (3) 본 조건의 제3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환불 처리한다.

**제61조.** 만일 본 조건 제6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본 조건 제60조 1, 2호에 기재된 구조 조치는 승객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조치이다. 협정의 다른 규정에서 규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네야오 항공사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62조.** 만일 주네야오 항공사가 그 승객에게 사전에 예약된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주네야오 항공사의 해당법규에 따라서 그 승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 제11장 항공기의 운전

### 제63조. 일반 규정

주네야오 항공사의 판단에 따라서, 항공기에서 승객의 행동이 탑승한 어떠한 사람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게 하거나 또는 승무원의 직무 이행을 방해하거나 또는 승무원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또는 흡연, 음주, 약 복용 또는 승무원 또는 기타 승객의 불편, 불쾌감, 손해를 유발했거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주네야오 항공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조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승객들은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그 항공기를 떠나도록 하고, 비행의 계속을 거부당할 수 있으며, 더 나가, 승객들은 탑승 시 비행으로 소추될 수 있다.

### 제64조. 전자 장치

안전을 위하여, 주네야오 항공사는 항공기에 관한 전자 장치, 이동전화, 휴대용 테이프 레코더, CD 플레이어, 전기 랩탑 컴퓨터 또는 전기 리모트 컨트롤 장난감과 인터폰의 발진 장치의 사용을

금한다. 그러나, 보청기와 심장 박동기는 허용된다.

#### **제65조. 금연 비행기**

주네야오 항공사의 모든 비행기를 금연이며, 항공기의 어느 곳에서든지 금연이다

#### **제66조. 안전벨트**

승객이 항공기에 착석할 때, 비행의 종료 시까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 **제12장 추가 서비스의 준비**

**제67조.** 만일 주네야오 항공사가 승객들을 위한 비행 서비스를 제외하고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또는 주네야오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육상 운송의 청구서 또는 영수증, 식당 예약, 제3자가 제공하는 운송 수단(항공 운송이 아님)인 차량 임대 등을 제공할 때, 위에 기재된 그 추가 서비스에 대해 준비하는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승객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며,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서비스의 질과 승객이 그 서비스를 받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규정과 조건은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

**제68조.** 만일 주네야오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육상 운송편도 제공하는 경우, 제67조는 그 육상 운송에 적용될 수 없다.

### **제13장 행정 절차**

#### **제69조. 일반 규정**

(1)승객들은 수입, 수출 또는 경유국가에 요구하는 여행 확인서와 비자를 부착해야 하며, 그 국가의 법규, 명령과 여행 요건에 따라야 한다.

(2)위에 언급한 확인서 또는 비자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또는 위에 기재된 법령, 지시, 요건,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한 승객들에 의하여 초래된 결과에 대해서는, 주네야오 항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70조. 여행 확인서**

여행 전에, 승객들은 해당 국가의 법규, 명령과 요건 또는 기타 규정에 요구하는 모든 수입, 수출, 건강 확인서와 기타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승객들은 주네야오 항공사가 여행 확인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일 승객들이 위에 기재된 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승객들의 여행 확인서가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가진다.

#### **제71조. 입국 불허용**

그 승객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 그 승객은 해당 국가가 주네야오 항공사에게 징수하는 벌금 또는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그 승객은 그 국가로부터 반환용으로 운송 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주네야오 항공사는 주네야오 항공사가 그 승객을 입국 불허용 국가까지 운송한 비행기의 티켓



요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2조.** 승객은 벌금, 억류 비용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확인 과정에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또는 이들 요건을 무시하는 승객들이 발생시킨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 주네야오 항공사 그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주네야오 항공사는 해당 국가의 법규, 명령, 요건 또는 기타 여행 규정을 따르기 않은 승객 또는 필요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승객에 의하여 발생하는 벌금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며, 그 승객은 지급된 모든 벌금 또는 비용을 주네야오 항공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주네야오 항공사는 주네야오 항공사가 유지하는 미사용 비행 구간의 티켓 요금 또는 승객의 보관료로부터 위에 언급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승객들은 승객들이 여행할 출발, 도착 또는 경유 국가의 해당 규정을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

### **제73조. 세관 확인**

필요 시, 승객들은 세관 또는 기타 국가의 관리들이 수행하는 수하물 확인을 받기 위하여 현장에 있어야 한다.

### **제74조. 안전확인**

승객들은 정부관리, 공항직원, 기타 운영자 또는 주네야오 항공사가 요구하거나 또는 필요로 하는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네야오 항공사는 이러한 유형의 손해, 비용이 주네야오 항공사에 의하여 초래되지 않는 경우, 승객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 손상, 장애물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4장 연결 노선**

**제75조.** 티켓 또는 연속 티켓에 따라서 주네야오 항공사 또는 운행사들이 수행하는 운송은 협정의 의미 상 단일 운송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본 조건의 제76조 규정을 참조할 것.

## **제15장 손실과 손해의 배상책임**

**제76조.** 주네야오 항공사의 승객 운송 책임은 운송 조건에 따라 제한되며 승객의 비행에 관련된 다른 운행사들의 승객 운송 책임은 그들 자신의 운송 조건에 의하여 제한된다.

**제77조.** 주네야오 항공사는 "운영자"란에 주네야오 항공사 회사 규범으로 채워진 비행 또는 비행 구간에 대한 운송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주네야오 항공사가 다른 운행사들의 티켓을 발행하거나 또는 운송용 체크인을 처리하는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는 그 운행사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체크인 수하물에 대하여, 승객은 티켓 또는 수하물의 확인에 기재된 최초 또는 최종 운행사에게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78조.** 다음의 적용법규를 따르는 주네야오 항공사가 또는 위의 법규를 무시하는 승객에 의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주네야오 항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9조.** 본 조건의 기타 규정이 규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주네야오 항공사는 승객에게 발생한 입증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손실 또는 비용을 배상한다.

**제80조.** 만일 그 손해 또는 손실이 적용법에 따라서 승객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그에 기인하는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은 그와 동일한 정도로 면제되거나 또는 경감된다.

**제81조.** 주네야오 항공사의 운송 계약, 본 조건과 그 면제 항목 또는 책임의 제한은, 주네야오 항공사의 위임 대리인과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어떠한 조건에서, 그 승객이 주네야오 항공사 의 위임 대리인과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받은 총금액은 책임 배상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2조.** 명확하게 명시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건은 주네야오 항공사로 하여금 협정과 적용법에 따라서 형성된 면책 또는 제한 해당 규정을 배제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제83조.** 승객의 신체 조건에 따라 악화되거나 발생하는 어떠한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및 사망에 대해서는, 주네야오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4조.** 주네야오 항공사는 승객의 수하물 또는 수하물에 포함된 장애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승객은 그 승객의 수하물 또는 수하물에 포함된 장애물, 주네야오 항공사의 기타 수하물 수하물과 재산에 포함된 장애물로 초래된 타인 또는 그들 재산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85조.** 본 조건 제4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체크인 수하물에 넣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손상이 발생해도, 주네야오 항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86조.** 협정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제 운송에 속하는 운송에 대한 협정상 책임 규정을 적용한다. 운송 및 협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제 운송에 속하지 않는 운송에 대하여 발생하는 승객 또는 그들 수하물의 손해는, 주네야오 항공사는 몬트리올 협정 해당 규정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 **제16장 이의제기 시한**

**제87조.** 수하물 티켓을 소지하는 승객이 그 수하물을 수령할 때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객들이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그것은 수하물이 완벽하며 운송 계약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88조.** 만일 체크 수하물의 손상이 발견되는 경우, 그 승객은 수하물 수령 이후 7일 내에 서면으로 주네야오 항공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9조.** 만일 체크인 수하물이 지연되는 경우, 그 승객은 수하물 수령 이후 7일 내에 서면으로 주네야오 항공사에게 배상 신청 통지를 해야 한다.

**제90조.** 만일 본 조건의 제88, 8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시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주네야오 항공사에 대한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17장 기타 규정**

**제91조.** 승객과 그들의 수하물 운송 시, 승객들은 그 동안 주네야오 항공사의 기타 자용 규정과 조건에 따라야 한다. 이들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들은 매우 중요하다; 미동반 미성년자, 임신부 및 병자를 운송하는 규정, 전자 장치의 사용 제한 규정, 항공기 등에서 음주 규정. 위에 언급된 운송 규정과 조건은 주네야오 항공사에게 요청할 것.

**제92조.** 본토 및 타이완 및 홍콩과 마카오 간의 항로 운송 이행.

**제93조.** 본 조건의 각 항목 아래에의 짧은 제목은 항목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의 것이다.

**제94조.** 본 조건은 영어 및 중국어로 편집되며, 그 두가 버전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 **제18장 효력과 수정**

**제95조.** 본 조건은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6조.** 주네야오 항공사는 언제라도 본 조건, 운송 규정, 티켓 가격과 비용을 수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수정은 수정 전에 이미 시작된 운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